MUNHWAJ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0 No. 2, June 2017, pp.94~115.*
Copyright©2017,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송민선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Corresponding Author : syujin@korea.kr

국 문 초 록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과 '김치담그기 풍습(2015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아마도 남한이 먼저 등재한 '아리랑(2012년)'과 '김장문화(2013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인해 남·북한 공유의 무형문화유산이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고찰하여 남·북한 문화통합의 단초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체제 적용을 위한 남·북한의 법규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남·북한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비록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하나 정세변화와 무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전개방법을 설계해 보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반조성단계→교류협력 추진단계→사업다각화 모색단계→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이 상호협력할 경우 일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적합한 협력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공유 무형문화유산이 남·북한 별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대상으로는 선정하였다. 막걸리·장·가양주·구들·전통자수가 그것이다.

남·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한다. 공유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된 후에는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방문전시와 공연, 공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협력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한민족문화의 힘을 발현할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고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공동등재의 모범사례가 되어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주제어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민족동질성

투고일자 2017. 03. 31 ● **심사일자** 2017. 04. 21 ● **게재확정일자** 2017. 06. 05

Ⅰ. 들어가는 말

2014년 11월 26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는 북한의 '조선민요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하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선정하였다. '조선민요 아리랑'은 북한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하 「무형유산협약」)에 가입한 후 첫 번째로 등재한 무형문화유산이었다. 이어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도 대표목록으로 선정되었다. 남한은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아리랑'과 '김장문화'를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한 바 있다.

'아리랑'과 '조선민요 아리랑' 그리고 '김장문화'와 '김치담그기 풍습'은 별개의 무형문화유산이 아니다. 남·북한이 공유한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제각기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남·북한이 별개의 대표목록을 가지게 되면서 두 개의 다른 유네스코 대표목록이 되어버린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사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남·북한이 공유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교류협력한다면 공동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발굴과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1]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물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등장 이후 민족문화-전통문화 정책에서 뚜렷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하나는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 정책의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의 활성화이다.[2]

북한은 2008년 「무형유산협약」에 가입한 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비물질문화유산' 개념을 도입하였다.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며 '민족유산 보호사업을 전국가적·전인민적 애국사업으로 전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3] 그해 7월 북한은 「민족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유산협약」의 범주를 수용하였다.

북한이 그간 유네스코에 등재한 유산은 모두 4건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개성 역사유적지구(2013년)'와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 '김치담그기 풍습(2015년)'이 등재되었다. 이는 북한이 문화유산 분야에서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유네스코 등재유산으로 세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국 내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당 무형문화유산이 국제적 가치를 인증받아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4]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공동체로서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보다 절실할 수 있다. 유네스코를 통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은 경색 정세를 타개하고 지속적인 시도로 민족일체감을 도출해내기 매우 용이하다. 남·북한이 공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협력하여 유네스코 대표목록 공동등재 성과를 도출하면 유네스코에서의 한민족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다. 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관리 협력으로 민족동질성을 확보하고 남북문화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 함한희, 2016, 「아리랑, 김치 그리고 국가주의」, 『비교민속학』 59, 비교민속학회, 411~412쪽.

2 조현성, 2016, 「북한 문화 정책의 지속과 변화」, 『한반도포커스』 제37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5쪽.

3 정은미, 2015,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을 향한 '조선속도창조'의 주문을 걸다」,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경제 · 사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3쪽.

4 공정배 · 이정원 · 김용범, 2012, 「〈가야금산조〉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와 관련된 한 · 중 문화갈등의 배경과 대응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63집(2012년 12월), 한국사상문화연구원, 358쪽.

이 연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검토를 기반으로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과 공동등재 방안을 고찰하여 남·북한 문화통합의 단초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무형유산협약」 체제 적용을 위한 남·북한의 법개정 내용과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간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은 전개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각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특히 남·북한 간 교류협력 성과를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공동등재 방안을 대상선정과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이미 공유 무형문화유산이 남·북한 개별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며 성과 또한 기대되기 때문이다.

Ⅱ. 남·북한의 문화유산 관련 법제

남한은 2017년 5월 말 현재 세계유산 12건, 인류무형문화유산 19건, 세계기록유산 13건 등 모두 44건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세계유산 2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건이 등재되어 총 4건을 보유하고 있다. 등재유산의 수량으로 볼 때 북한은 남한 등재유산의 9.09%를 차지한다.[5]

남한의 등재유산과 북한의 등재유산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분야보다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 연관성이 발견된다. 남한이 2012년 '아리랑'을 등재하자 북한은 2년 뒤 '조선민요 아리랑'을 등재하였다. 또, 남한이 2013년 '김장문화'를 등재하자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등재하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절차를 생각해보면 남한의 '아리랑' 신청(2011년)과 등재(2012년) 상황을 지켜본 북한이 2012년에 '조선민요 아리랑'을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6] 곧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유네스코에 제출(2013년)한 것을 알 수 있다.[7]

여기에서는 남·북한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변화내용을 통해 「무형유산협약」에 대한 이해와 수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의 관련 법제

남한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되고 있다.[8] 2015년 3월 일부개정 전까지 「문화재보호법」 상 무형문화재의 정의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었다. 남한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5 남·북한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7.05.31. 현재)

구분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합계
남한	석굴암 ·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 역사문화지구(공주, 부여, 익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줄타기, 택견, 매사냥(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2016)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5 · 18민주화운동기록물, 새마을운동기록물, 한국의 유교 책판,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44
북한	고구려 고분군(2004) 개성 역사유적지구(2013)	조선민요 아리랑(2014) 김치담그기 풍습(2015)		4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물질민족유산심의위원회(위원장 룡 주) 결정문(2012.08.12.) 참조.

7 UNESCO Nomination file no. 00914,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4, 서명날짜 참조.

8 문화재보호법(제정 1962.01.10.) 제2조(문화재의 정의).

된 이래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소멸될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중국이 '조선족 농악무'를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하고 2011년 '아리랑'을 중국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남한 내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에서 '아리랑'은 보유자(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중요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2014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제도적 측면을 보완하였다.[9] 한민족 내 보편적으로 공유된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게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10]

그러나 여전히 원형유지가 보호·보존의 기본원칙이었다.[11] 이로 인해 현 보호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창조적 계승·발전의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율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으로 노출되었고[12] 새로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른다. 이에 무형문화유산의 현실을 반영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무형법」은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원형 유지, 중점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형(典型)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민족정체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며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현하고 향상시키는데 공헌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문화재보호법」 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무형문화재의 범위도 「무형유산협약」에 준하는 7개 범주로 확대되었다. 즉, ①전통적 공연·예술 ②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구전 전통 및 표현 ⑤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⑦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이 범주에 근거한 무형문화유산 대상들이 발굴될 것이다.

2. 북한의 관련 법제

북한은 1946년 4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공포했다. 북한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처음으로 제정한 법제였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되었던 관련 법규를 당시 북한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만들었다. 이후 '문화유적유물보존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주석 명령 제35호, 1985년)'와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992년) 등을 통해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였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1993년)'를 근간으로 「문화유물보호법」(1994년)이 제정되어[13]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였다.

북한의 법규는 2009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북한의 각종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때다. 그해 4월 북한 헌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이어 몇몇 법규를 정비해 나갔다.[14] 정비 대상은 정권과 체제 유지에 큰 부담이 없고 선전 효과가 높은 법제들이었다. 경제적·사회적·문

9 문화재보호법(개정 2014.01.28.)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신설 2014.12.23.).

10 송민선, 2015,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무형유산학회 학술대회』, 62~63쪽.

11 문화재보호법(일부 개정 2014.01.28.)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 3.28. 법률 제13248호, 2015. 3.27. 제정) 개정이유 참조.

13 '문화유물보호법'은 1994년 제정된 이후 총 3차례(1999년, 2009년, 2011년) 수정되었다.

14 이규창, 2014, 「김정은 시대의 북한 법제 동향 : 특징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9쪽.

화적 권리에 대한 법제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법제가 등장하였다.[15]

이때 문화유산에 대한 법규가 「문화유산보호법」(2012년)으로 정비되었다. 기존의 「문화유물보호법」에는 없었던 '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이란 개념이 등장하였다.[16]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을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구분하였다. 물질문화유산은 국가유적과 일반유적으로, 비물질문화유산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과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나누었다.

비물질문화유산을 전담하는 국가 조직도 신설하였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비물질유산처를 배치하였다. 2013년부터는 중앙과 지방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의 심의와 등록이 진행되었다.

'활발히 진행되는 비물질민족유산 보호사업(로동신문, 2014.01.19일자)'을 시작으로 비물질문화유산에 관한 기사가 집중 보도되었다.[19]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라는 로작(담화, 2014.10.24.)에서 김정은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라 규정하고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과학연구기관들,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을 더 많이 발굴 수집"할 것을 당부했다.[20]

북한은 「문화유산보호법」 제정 3년 뒤인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모두 6개의 장에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유산'을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였다.[21] 민족유산은 역사적 시기, 보호가치, 보호 전망을 정확히 심의하여 평가한다.[22] 비물질유산 범주는 ①구전 전통과 표현 ②전통예술 ③사회

표 1. 북한의 문화유산 구분

문화유물보호법(2011 수정보충)					문화유산보호법(2012)[17]				
구분		평가			구분		평가		
문화유물	역사유적	국보 문화유물	준국보 문화유물	일반보존 문화유물	물질문화유산	역사유적	국가유적		일반유적
	역사유물					역사유물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
					비물질문화유산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지방 비물질문화유산

민족유산보호법(2015)[18]				
구분		평가		
물질유산	역사유적	국가유적		보존유적
	역사유물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
비물질문화유산		국가 비물질유산		지방 비물질유산

15 이규창, 2014, 앞의 논문, p.27.

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개성일대 문화유적 연혁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4쪽 참조.

1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책, p.14 〈표 2〉 참조.

18 민주조선,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2)」, 2015.07.15. 참조.

19 박성진, 2016, 「유네스코에 등록된 남·북한의 문화유산」, 『e행복한 통일(웹진)』 vol.3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 '북한, 무형문화재 10여건 등록…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NK투데이, 2016.05.26.

21 민주조선, 2015.07.09,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1)」.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닷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 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

22 민주조선,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2)」, 2015.07.15.

적 관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④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⑤전통수공예로 나누었다.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7개 범주로 구분한데 비해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유네스코 범주에 맞춰 5개 범주로 재정리하였다.

북한이 연이어 법규를 개정한 것은 「무형유산협약」 가입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23] 북한이 신법을 적용하여 선정한 비물질유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무형유산협약」의 제정 이후, 남·북한 모두 이 협약에

표 2. 무형문화유산 범주 비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한 무형문화재	북한	
		비물질문화유산	비물질유산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구전 전통 및 표현	•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 구전문학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예술	전통적 공연 · 예술	무대예술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 · 의식 및 축제행사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 사회적 전통 및 관습 • 각종 례식과 명절 행사	사회적 관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한의약,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자연과 우주에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공예기술	공예 ·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등	전통수공예
5개 범주	7개 범주	7개 범주	5개 범주
무형유산협약(2003)	무형법(2015)	문화유산보호법(2012)	민족유산보호법(2015)

표 3. 북한 비물질민족유산 대표목록

등록번호	유산이름	구분	비물질민족유산 영역	분포지역	등록날짜
1	아리랑	국가비물질 민족유산	구전전통,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 명절행사	조선반도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지역	2012. 08.13
2	김치담그기	국가비물질 민족유산	사회적 관습, 구전전통,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조선반도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지역	2012. 09.05.
3	막걸리 담그기	국가비물질 민족유산	사회적 관습, 구전전통,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조선반도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지역	2012. 09.05.
4	장담그기	국가비물질 민족유산	사회적 관습,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구전전통	조선반도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지역	2012. 11.08.
5	치마저고리 차림풍습	국가비물질 민족유산	사회적 관습, 명절행사, 전통수공예, 구전전통,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조선반도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지역	2012. 11.08.
6	평양랭면	국가비물질 민족유산	전통음식, 사회적 관습,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구전전통, 전통수공예	평양을 비롯한 주변지역	2013. 02.25
7	연백농악무	국가비물질 민족유산	전통예술, 사회적 관습, 명절행사, 전통수공예,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황해남도 연안군, 배천군, 청단군	2013. 02.25
8	씨름	국가비물질 민족유산	민족체육, 사회적 관습, 명절행사, 구전전통,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조선반도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지역	2013. 02.25

※ 〈참고자료 : '조선민요 아리랑' 등재신청서(2013.11.04).〉

※ 이외에 설맞이 풍습, 첫돌맞이 풍습, 태권도, 구들생활풍습, 연띄우기, 고려청자제작술, 정월대보름과 달맞이 풍습, 감홍로 양조기술, 추석명절 풍습, 신선로, 주몽설화, 전통수예, 뜸치료술, 떡국만들기, 산삼이용기술, 단군제례, 고려인삼재배와 이용풍습, 척추변형성 질병에 대한 침 치료술, 대퇴골두 무균성괴사에 대한 침 치료술, 화침치료법, 약침에 의한 치료법, 쑥떡만들기, 녹두지짐풍습, 과줄(강정, 다식, 약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가공법, 동지죽 풍습, 오갈피술 양조방법, 백화술 양조방법, 단군술 양조기술 등이 있다.[24] (총 36개).

23 JTBC, 2014.11.14, '북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 적극 추진', 민주조선, 2015.07.15, 앞의 글.

24 JTBC(2014.11.14.), NK뉴스(2016.05.22), 뉴시스(2016.02.02.), 노컷 뉴스(2016.06.02.) 및 통일뉴스(2016.07.30.) 보도 참조.

가입하였다. 남·북한 모두 협약체계의 수용을 위해 기존의 문화유산보호 법제를 개정하였다. 남한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북한은 「문화유산보호법」과 「민족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 대상 범주를 확대하거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Ⅲ. 남·북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남·북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

남·북한 간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교류협력한 사례는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 역사유적지구(2013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한이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구체적으로 협력한 사례는 등재 절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전 준비단계이다. 주로 국제기구나 민간기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했다. '고구려 고분군'의 경우 2001년부터 '북한 고구려 고분군 신탁기금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한 당국이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을 공여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북한의 고구려 고분들에 대한 보존처리와 모니터링, 보존처리 교육 및 장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25] 2005년 11월 '개성 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남북 민간기구가 주축이 되어 남북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의 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26] 곧이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공동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둘째, 진행단계이다. 세계문화유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전문가의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대책방안을 지원하였다. 국제회의 참가 시에는 남북 상호 공동대응을 하고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북한은 2002년 1월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다. 하지만 2003년 7월 등재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전문가 현지실사 후 현지 재조사와 북·중간 공동등재를 권고했기 때문이었다.[27] 남한은 '고구려 고분군'의 등재 반려 사유를 극복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였다. '고구려 고분군'의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만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외교지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 역사유적지구'의 경우 2007년 1월 세계문화유산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2008년 등재가 반려되었다. 반려된 이유는 개성 유적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유적지역 경계의 재설정, 잠정적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역의 설정 필요 때문이었다. 이후 북한은 2011년 2월 반려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3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다.[28] '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제안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고려궁성[만월대]의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29] 발굴결과 고려궁성의 건물배치 양상과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수정·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현

25 조동주, 2012,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방안」, 『민족문화자산 남북공동보존 학술심포지엄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통일부 ·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77~78쪽.

26 박성진, 2013,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16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63쪽.

27 신미아, 2011,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요 쟁점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0, 고구려발해학회, 91쪽.

28 이혜은, 201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추진) 과정」, 『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 문화재청·제주특별자치도·(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33~37쪽.

29 박성진, 2013, 앞의 논문, p.65 주6) 참조.

장실사를 준비하면서 발굴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등재 이후 사후관리 단계이다.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고구려 고분군'의 관리방안에 대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와 고분군 실태조사가 남·북한 간 민간기구를 통해 개최되었다. '개성 역사유적지구'에서는 남북공동발굴조사가 계속 추진되어 수많은 유물과 건물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복 70년 기념사업으로 '남북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을 서울과 개성에서 동시 개최하기도 하였다.

2. 남·북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교류협력은 일관되게 장기적인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일구어 낸 성과였다. '고구려 고분군'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1년이 소요되었고, '개성 역사유적지구'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계속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력사업이 오랜 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등재 신청 문화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신청서 작성은 물론, 등재 이후에도 해당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담보할 방안을 요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대략 5~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문화적 동질성의 요건을 확보하고 상호교류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교류협력 프로그램 외에 실질적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남북당국 간 기본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여건 마련을 위한 신뢰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신규 공동등재 보다 남한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북한지역으로 확장하여 추가 등재하는 것이다. '조선 왕릉(2009년)'과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년)'이 그것이다. '조선 왕릉'은 북한에 제릉, 후릉 등 2기가 있으나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인돌 유적'도 북한 소재 동일시기 고인돌을 추가하면[30] 등재가 가능할 것이다. 남북공동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31] 즉, 북한지역 내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고 남북이 함께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시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등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추가등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들 수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해당 유산이 국가 간 공유되었으며 해당 공동체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면 공동등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4~5년) 또한 세계문화유산에 비해 짧다.

남한은 이미 공동등재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다수 국가와 더불어 '매사냥'과 '줄다리기 의식과 놀이'를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매사냥은 2010년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등 11개국이 참여하여 공동등재 하였다. 2012년 이후 공동등재 국가가 계속 추가되었다. 매사냥은 동물[매]과 인간이 함께 전승해온 문화[사냥기술]이며 다국가가 보유한 문화적 요소의 다원성과 보편성을 잘 구현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는 남한이 처음으로 주도한 다국가 간 공동등재 사례이다. 남한은 민속 줄다리기의 문화

30 조동주, 2012, 앞의 논문, p.78 참조. 북한 소재 청동기시대 고인돌은 총 6기이다. 관산리 고인돌, 노암리 고인돌, 룡동리 고인돌, 묵방리 고인돌, 용산리 고인돌, 황대성리 고인돌.

31 학계에서는 공동유산(共同遺産), 공유유산(共有遺産 또는 公有遺産)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였다.

적 다양성과 공유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국가 간 공동등재를 추진하였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과 수년간 협력하여 2015년 공동등재 하였다.[32] 줄다리기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로 현존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전승공동체, 단체, 개인, 보존회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국가 간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즉, 지역공동체와 전승공동체 그리고 정부당국 등 협력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등재된 뒤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활성화와 보전·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33] 유네스코 역시 여러 국가들의 공동등재 신청이 국제협력이라는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이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남·북한 간 공유유산을 공동등재할 때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남·북한은 무형문화유산을 다수 공유하고 있고, 공유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유산의 공동체가 공동등재에 협력만 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남·북한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한민족 '아리랑'이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될 때였다.

2011년 5월 중국은 연변자치주의 '아리랑'을 국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것은 조선족의 '아리랑'을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당시 남한에서는 연일 언론이 비등하였다. 한민족 고유의 '아리랑'이 중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한 당국은 중국 보다 먼저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으로는 민간기구를 통해 북한에 공동등재를 제의하였다. 하지만 당시 남·북한 간 정세문제로 인해 북한 당국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라며 호응하지 않았다.[34] 남한은 '아리랑'을 2012년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단독 등재하였다.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아리랑 등재가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증진 등 전세계 한민족간의 유대강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논평하였다.

북한은 2014년 '조선민요 아리랑'을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하였다. 북한은 등재신청서에서 해당 유산의 지리적 범위를 조선반도와 조선민족이 사는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규정하였다.[35] 또한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은 한민족으로서는 민족정체성의 상징을 간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민족을 아리랑민족"으로 부른다고 서술하였다.[36] 북한 역시 '아리랑'을 민족 고유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민족의 공유유산으로 '아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한반도 정세 불안 등으로 공동등재에 합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남한의 '아리랑' 공동등재 요청에 대해 북한이 우호적인 선택을 했더라면 유네스코 내에서도 분단된 민족의 공동등재라는 사례로 매우 주목받았을 것이다.

또 한 사례가 남·북한 각각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씨름'이다. 2014년 7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씨름'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씨름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장실)'가 구성되었다. 남한에서 '씨름'은 민족의 혼과 얼을 담고 있는 '민족문화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씨름'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수 있는 민족적 당위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남·북한 공동등재를 고려하고 접촉하였다. 북한 또한 비물질유산 담당부서의 고위 공직자가 '씨름'을

32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참조.

33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등재를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지시줄다리기' 담당자 고대영(당진시청 학예연구사)과의 인터뷰(2016.08.23) 내용.

34 신준영, 2014, 「토론문」,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쪽.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물질민족유산심의위원회(위원장 룡 주) 결정문(2012.08.12.).

36 UNESCO Nomination file no. 00914,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4.

비롯한 민족 전통문화의 공동등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37] 그러나 2015년 3월 북한 단독으로 '씨름'을 등재 신청하면서 결국 공동등재는 무산되었다. 남한도 2016년 3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의 '씨름'은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정보보완'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에 실패한 것이다.[38] 남한의 '씨름'은 2017년 예비목록에 올라있어 2018년쯤 정부간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도 2018년 예비목록으로 제출해두었으니 남·북한 간 공동등재를 위해 다시 협력을 추진해볼만 하다. '아리랑'과 '씨름' 사례를 볼 때 북한과의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상황과 정세에 따른 맞춤식 대응책이 요구된다.

IV. 남·북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류 협력 방안

1.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기본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함으로써 한민족 문화공동체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남·북한 간 상호 신뢰성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은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이미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39] 북한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 중시의 립장에서 력사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며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학술교류'도 많이 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40]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도록 선정하여 실효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첫째, 이미 조사나 연구활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단순 작업들이 요구되는 분야가 적정하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절차에서 벗어나 이미 상호합의가 된 분야를 교류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치적인 고려 대상을 탈피하여 남·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추진한다. 교류협력을 위해서 남·북한 간 이견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비용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교류한다. 남한이 교류협력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분야보다는 소액의 예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북한이 인정할 수 있는 분야가 타당하다. 넷째, 시급한 분야부터 추진한다. 보존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분야가 교류협력의 첫 번째 대상이다. 다섯째, 국내적 · 국제적 성과가 큰 분야부터 추진한다. 한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한다.[41]

문화유산 분야는 북한이 수용만 한다면 교류협력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북한 전문가 및 남북 문화교류 협력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무대에서 남북 문화교류 협력의 전망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42] 남·북한 공동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에서 유형·무형문화유산의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협력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제무대 진출과 관련한 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및 협력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 및 협력이 각각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북한의 국제

37 동아일보, 2014.07.03, 北 씨름,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고 있던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강화 협력회의'에 참석한 노철수 차장이 "씨름을 시작으로 냉면, 농악무 같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함께 등재하면 상당히 뜻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8 아태무형유산센터, 2017, 『2003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1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2016)』, 아태무형유산센터, 49쪽.

39 문화재보호법(2016.02.03)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

40 조선중앙통신, 2014.10.30, '201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41 박영근, 2010,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34~35쪽.

4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북한 국제문화교류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99~201쪽.

무대 진출을 위해 지원 및 협력해야 할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43] 남북은 다수의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유산에 대한 민족공동체의 이해도 깊다.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이 남·북한 간 상호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나 등재지원 사업은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은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이 추구하는 실천기제이기도 하다.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은 비록 비정치적인 분야이긴 하나 남·북한 간 정세변화와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위한 추진 환경은 전개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사업들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단계별 전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첫째, 기반조성단계이다.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남한 내 교류의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구축 등 사전준비에 힘쓴다. 북한에 교류협력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실행 가능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로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단계에서 큰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류협력 추진단계이다. 교류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단계이다.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다. 북한이 등재 신청한 대상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

표 4.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 단계별 전개[44]

전개 단계	기반조성단계	교류협력 추진단계	사업다각화 모색단계	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
추진 내용	• 남한 내 교류의 물적 · 인적 기반조성 •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구축 → 교류사업 선제 제안으로 주도권 확보	• 교류협력시스템 구축, 확대 •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 실제 적용 등재지원 대상선정, 실질 이득 확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사회문화교류 활발 • 통일 대비 공동체 의식함양 및 문화통합 준비	• 다양한 공동협력사업 장기 추진계획 수립
사업 내용	• 인류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지원 •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Pilot Project 운영) • 국민 공감대 확보	• 한민족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 공동등재 무형문화유산 상호 방문 전시 및 공연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축제 •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록보존	•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모니터링 실시 • 보전 · 관리 · 진흥 프로그램 마련
제도 인프라	•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 협력 규정(안) 마련	•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 협력 합의서 체결 (채널확보)	• 남북 교류협력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물적 인프라	• 교류협력기금 안정적 조성 및 재원 다각화			
조직 인프라	• 담당자 전문성 강화 •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 지자체 · NGO 협력체제 구축			• 인류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

43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는 권영민, 1992,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안과 전통문화 유산의 공동조사 방안」, 『통일로』 51호, 안보문제연구원, 황권순, 2012, 「북한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민족문화자산 남북공동보존 학술심포지엄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통일부·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신현욱·박영정, 201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41, 한국민요학회가 있다.

44 김동성, 2016,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경기도의 사례」 발표자료, 『통일교육원 교육자료』, 통일교육원, 19~20쪽 참고.

록 지원하고 나아가 공동등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선정하여 공동등재하는 성과를 도출한 다음, 주기적 공동등재를 추진함으로써 남·북한이 공동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동일민족임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한다.

셋째, 사업다각화 모색단계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남·북한 간 사회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간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문화통합을 위한 준비가 요청되는 시기이다. 남·북한 간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되고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단계이다.

넷째, 정책 및 대안 모색단계이다. 남·북한 간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장기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유네스코 대표목록을 공동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신뢰구축을 토대로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센터'를 건립하여 공동운영함으로써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전 및 관리, 활용,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조사연구 및 통합 DB를 구축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다.

각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우선 남한 내 합의를 통해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남북협력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다. 공동협력의 성과들이 도출되면 '남북교류협력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무엇보다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재보호기금에 독자계정을 설치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하여 성금을 모금하거나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신탁기금을 확대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조직 인프라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과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협력체계구축은 내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국내적으로 지자체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인적·조직적 기반이 구축되면 향후 교류협력을 전담할 '인류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인프라 아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정보공유로 시작하여 보전·관리·진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교류협력 추진단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 및 공동등재 사업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한민족 문화의 힘을 발현할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협력은 우리 고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공동등재의 모범사례가 되어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45]

이러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을 주도할 주체세력들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단계별 추진 흐름에 따라 당국과 민간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고 상호간 적절한 조화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간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나섰던 협의체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다. 직접적인 사업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라는 완충지대를 활용하거나 국제적 제도와 기준을 적용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내걸고 '세계화'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중점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45 신현욱 · 박영정, 2014, 앞의 논문, pp.142~143.

참여 가능한 국제기구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Ⅱ급)와 유네스코 인가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NGO이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보호 협력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리고 문화재청, 당진시 등과 협력하여 '줄다리기 의식과 놀이'의 공동등재를 추진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태무형유산센터를 남북 무형문화유산 협력사업의 협상 창구로 활용하여 공동등재를 추진해볼 수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NGO는 점차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기여와 활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칭 '유네스코 무형유산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조직들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이의제기 및 지지발언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남·북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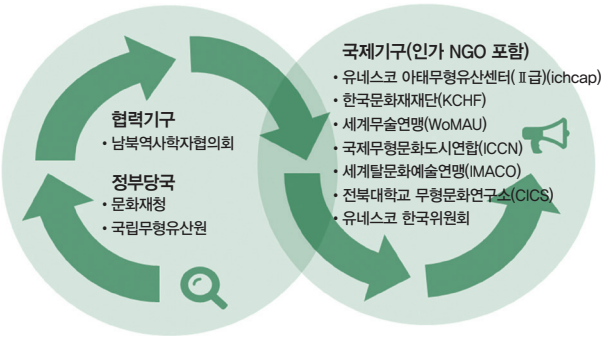

남·북한이 상호협력할 경우 일차적으로 당장 실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적정한 협력대상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공동등재는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유네스코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문화통합의 과정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프로그램을 정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방안

2009년 '동아시아 공동무형유산보호 국제포럼'에서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이 채택되었다.[46] '무형문화유산이란 영토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며 '영토적 경계가 문화적 경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공동 무형문화유산이 국가 간, 공동체 간 상호이해와 존중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유유산의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철학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목록을 검토하고,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등재 추진동향이나 등재 심사기준, 등재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해 ①유산의 명확한 관련 공동체는 누구인가? ②현재에도 재창조되고 의미가 있는 살아있는 유산인가? ③해당 유산의 등재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확보와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국가 공동등재의 경우에는 과연 해당 유산이 '공유된'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공동체'가 공동등재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유된 문화적 정체성과 의식없이 비슷한 유산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다국가 공동등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7]

「무형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이 될 신청서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1건도 등재되지 않은 국가, 2순위

4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강릉시, 2009,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릉시, 20~21쪽.

47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잠정목록 선정연구』, 문화재청, 16~17쪽.

가 공동등재 국가, 3순위가 등재 수가 적은 국가 순이다.[48] 그런 까닭에 단독등재는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지침을 적용하면 짝수 해에는 단독등재를, 홀수 해에는 공동등재를 할 수 있다. 남한은 매 홀수 해에 공동등재를 추진해야 당해 연도에 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있다. 유네스코 정보에 따르면 남·북한 모두 2017년 심사신청 목록이 없다.[49] 다만, 북한의 2018년도 예비목록에 '씨름'과 '한복풍습'이, 남한의 2017년도 예비목록에 '씨름'이 올라와 있다.

남·북한 간 민족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유네스코 대표목록을 공동등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남·북한 모두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국가지정목록·지방지정목록·예비목록을, 북한은 국가 비물질유산 대표목록과 지방 비물질유산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가 가능한 검토대상은 〈표 5〉와 같다.

위의 대표목록 공동등재 검토 대상은 ①남·북한 각각 국가목록에 등록된 대상 ②중국 조선족 보유 무형문화유산으로 중국 국가목록에 등재된 대상[전략적 검토] ③심사유보 대상이나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대상 ④북한에서 국가목록으로 등재하면 남한과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남·북한 공동등재 여건에 적합한 대상을 살펴보면 막

표 5. 남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검토대상 현황

명칭 (無順)	국가목록 여부		중국 국가 등재 (조선족)	세부종목	비고
	남한	북한			
막걸리	2011예비	국가	–	남 : 막걸리 북 : 막걸리 담그기	2019~2031 격년 신청
장	2011예비	국가	–	남 : 장 북 : 장 담그기	2019~2031 격년 신청
가양주	국가 · 지방	국가	–	남 :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 등 북 : 감홍로, 오갈피술, 백화술, 단군술	2019~2031 격년 신청 (남 예비목록)
구들	2011예비	국가	–	남 : 구들 북 : 구들 생활풍습	2019~2031 격년 신청
전통자수	국가	국가	–	남 : 자수장 북 : 전통수예	2019~2031 격년 신청 (남 예비목록)
한복	국가	국가	국가	남 : 침선장, 염색장, 누비장 북 : 치마저고리차림풍습	(남 예비목록) (북 예비목록)
추석	2011예비	국가	국가	남 : 추석 북 : 추석명절 풍습	
가야금[50]	국가	–	국가	남 :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악기장	(남 예비목록) 북 국가등재 필요
탈놀이	국가	–	–	남 : 하회별신굿탈놀이, 양주 별산대놀이 등	(남 예비목록) 북 국가등재 필요
총계	9종	7종	3종		

48 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2003 협약 제9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 pp.98~100.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제33조에 '위원회는 사무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려하여 향후 2년간 다루어질 무형문화유산 신청서의 수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8차 정부간위원회(2013년) 50개, 제9차 정부간위원회(2014년) 50개로 결정하여 2015~2017년까지 심사종목 수를 각 50개로 제한하였다. 한 국가가 제출한 신청서 중 최소 한 개 이상은 2년 회기 동안 다루어져야 한다. 또, 운영지침 제34조에 따라 등재 우선 순위를 ①등재된 종목이 하나도 없거나, 모범사례 목록, 국제원조 신청, 또는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②공동등재 신청서 ③등재 종목이 적은 국가의 신청서, 모범보호사례 목록, 국제원조 신청서 순으로 정한 바 있다.

49 http://www.unesco.org/culture/ich/en/submitting-states-and-priorities-00860, Submitting States and priorities for 2017 cycle.

50 공정배 · 이정원 · 김용범, 앞의 논문, p.380~383 참조.

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 등 총 5종이다. 한편, 위 검토대상 중 중국이 국가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한복, 추석, 가야금이다. 한복풍습은 북한이 2018년 예비목록에 등재했다. 추석은 남북 모두 예비목록에 등재하지 않았다. 가야금은 남한은 예비목록에 등재하였으나 북한의 국가목록에는 없다. 그러므로 한복, 추석, 가야금에 대한 등재는 중국의 등재 움직임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공동등재는 2019년부터 격년으로 신청을 시작하여 2031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남한이 참여한 두 사례의 추진과정을 분석해 남·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추진 절차와 참여 주체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매사냥'의 경우 2006년부터 준비하여 2010년에 공동등재 되었고,[51]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는 2012년부터 준비하여 2015년에 공동등재 되었다.[52]

표 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절차

1차년도 5월	공동등재 대상 선정 자문회의
▼	
1차년도 12월	공동등재 대상 국내·외 현황조사
▼	
2차년도 1월	공동등재 대상 결정
▼	
2차년도 4월	공동등재 정보 세션 개최
▼	
2차년도 10~12월	공동등재 당사국간 회의
▼	
2차년도 4~11월	신청서 작성 조율
▼	
2차년도 11월	공동등재 당사국 자료 제출
▼	
2차년도 11~12월	연락담당국 자료 취합 및 정리
▼	
2차년도 12월	신청서 최종 조율 및 정보 보충을 위한 당사국 회의
▼	
3차년도 3월	공동등재 신청서 유네스코 사무국 제출 (보완 요청 11월)
▼	
4차년도 2월	공동등재 신청서 수정 및 보완 제출
▼	
4차년도 4월	공동등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	
4차년도 11월	성공적 등재를 위한 회원국 교섭활동
▼	
4차년도 11~12월	성공적 등재를 위한 당사국 대책회의
▼	
4차년도 12월	유네스코 심사기구 논의
▼	
4차년도 12월	공동등재 최종 결정

위와 같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첫째, 참여국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소정의 준비과정이 소요된다. 둘째,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획과 각종 문서 및 정보자료 취합 시 도출되는 참여국 간 이견을 조율할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 셋째, 등재대상 공동체들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간 공동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내에서 공동등재 대상인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활동과 공동체의 참여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대상으로 결정한다.

공동등재 대상 선정 이후 정부당국과 함께 이를 논의할 주관단체를 선정한다. 남·북한 내 공동등재 협의채널이 생성되면 남·북한 내 대상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완료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남·북한 간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신청서 초안작성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합의한다. 작성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동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취합·정리한다. 당사국간 공동등재 신청서를 최종 조율하고 보충 자료들까지 확보되면 공동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한다.

51 술래이만 칼라프, 2009, 「아랍에미레이트의 매사냥 유네스코 다국간 공동 유산 등재 추진 경험과 시사점」,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강릉시, 146~149쪽.

52 아태무형유산센터, 2016, 『2003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0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2016)』, 아태무형유산센터, 152쪽.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등재 대상을 진흥하고 공동체의 인식을 제고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진한다. 주로 공동등재 대상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학술행사나 지역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조직하기도 한다.

공동등재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유네스코가 강조한 문화적 통합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공동등재를 위해 개최한 다양한 회의와 협력 과정을 통해 상호간 우호를 다지고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장기간 준비과정에 참여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참여 NGO들도 연대를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등재의 긍정적 영향을 도출해 낼 수 있다.[53]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된 대상은 남·북한 간 다양한 사업을 공유할 수 있다. 「무형유산협약」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관련 전시회, 공연, 학술대회, 실태조사 등을 교류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등재되어 있는 '아리랑'이나 '김장문화'의 보전 및 관리, 활용, 진흥을 위한 교류사업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그간 남·북한을 둘러싼 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일련의 성과를 도출할 때도 있었지만,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라 급작스럽게 단절되기도 하였다. 문화유산은 남북분단 이전의 전통문화가 내재되어 있고 한민족 공동체의 동질성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 문화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기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무대를 통해 문화유산을 논의할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논의의 장도 있다. 앞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수단으로 남·북한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 살펴보았다. 타 문화유산에 비해 실질적 이득 확보와 단기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방안과 실천방법 중 하나인 공동등재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교류협력을 위해 추진해야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해본다.

첫째, 남·북한 간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위한 '무형문화유산협의체'를 구성한다. 우선 남한 내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뒤, 전략적 검토를 통해 북한측(조선유네스코 민족위원회,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무형문화유산협의체'는 민간단체와 학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동등재 신청과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연구·보호·증진 등의 협력을 담당한다. '무형문화유산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청 내에 북한 무형문화유산 전담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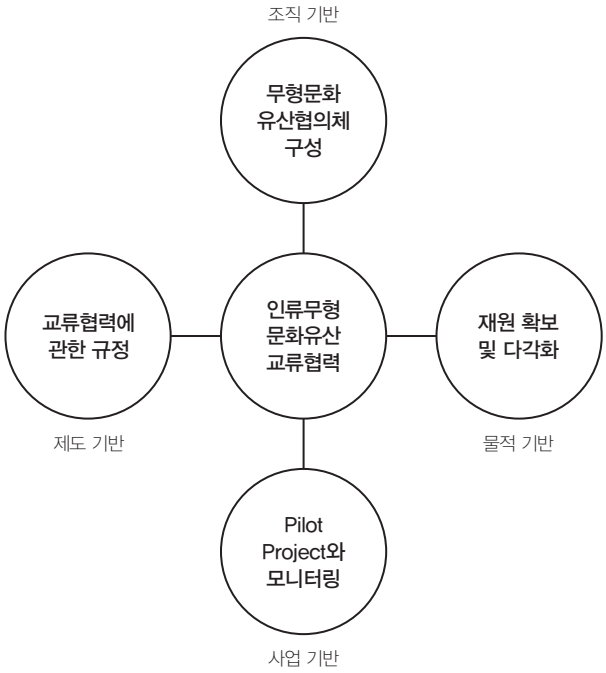

둘째,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남한 내에서 북한의 인류

53 술래이만 칼라프, 앞의 글, 149~150쪽.

무형문화유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교류협력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조항도 삽입하도록 한다. 또한, 「남북협력기금법」과 「문화재기금법」을 개정하여 북한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마련하는 등 필요 재원을 다각화한다.

셋째,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추진한다. 추진방식과 절차 등이 합의되면 추후 지속적인 공동등재를 도모한다. 등재된 대상들에 대한 법적 모니터링도 동일한 방식과 절차대로 이행토록 한다.

국제협약 이행을 통한 남·북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은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남북 문화통합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동일 민족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유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 공정배 · 이정원 · 김용범, 2012, 「'가야금산조'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와 관련된 한중 문화갈등의 배경과 대응방안」『한국사상과 문화』 제63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p.358, pp.380~383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개성일대 문화유적 연혁집』, 국립문화재연구소, p.14
- 권영민, 1992,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안과 전통문화 유산의 공동조사 방안」『통일로』 51호, 안보문제연구원
- 김동성, 2016,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경기도의 사례 발표자료」『통일교육원 교육자료』, 통일교육원, pp.19~20
- 박성진, 2016, 「유네스코에 등록된 남·북한의 문화유산」『e행복한 통일(웹진)』 vol.3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박성진, 2013,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현대북한연구』 16(3), 북한대학원대학교, p.63, 65
- 박영근, 2010,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4~35
- 송민선, 2015,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무형유산학회 학술대회』, 무형유산학회, pp.62~63
- 술래이만 칼라프, 2009, 「아랍에미레이트의 매사냥 유네스코 다국간 공동 유산 등재 추진 경험과 시사점」『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릉시, pp.146~149, 149~150
- 신미아, 2011,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요 쟁점 연구」『고구려발해연구』 40, 고구려발해학회, p.91
- 신준영, 2014, 「토론문」『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5
- 신현욱 · 김용범, 2011,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로 야기된 한국와 중국 간 문화적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한국언어문화』 4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신현욱·박영정, 201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방안」『한국민요학』 41, 한국민요학회, pp.142~143
- 아태무형유산센터, 2017, 『2003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1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2016)』, 아태무형유산센터, p.49
- 아태무형유산센터, 2016, 『2003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0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2015)』, p.152
- 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2003 협약 제9차 정부간위원회 참가보고서(2014)』, pp.98~10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릉시, 2009,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 pp.20~21
- 이규창, 2014, 「김정은 시대의 북한 법제 동향 – 특징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통권 제17호, 법무부, p.9, 27
- 이혜은, 201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추진) 과정」『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자료집』, 문화재청·제주특별자치도·(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pp.33~37
- 정은미, 2015,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을 향한 '조선속도창조'의 주문을 걸다」『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경제·사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13
- 조동주, 2012,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방안」『민족문화자산 남북공동보존 학술심포지엄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통일부 ·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pp.77~78
- 조현성, 2016, 「북한 문화 정책의 지속과 변화」『한반도포커스』 제37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25

참고문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북한 국제문화교류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199~201
-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잠정목록 선정연구』, 문화재청, pp.16~17
- 함한희, 2016, 「아리랑, 김치, 그리고 국가주의」 『비교민속학』 59, 비교민속학회, pp.411~412

- 노컷뉴스, 2016.06.02
- 뉴시스, 2016.02.02
- 데일리NK, 2014.06.11, '北,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신청 … 때 아닌 '아리랑' 논란'. 오는 11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서 결정…中도 등재 신청 가능성
- 데일리한국, 2014.06.11, '北, 인류무형유산 등재 늘려야 … 무형유산 보호 강조'
- 동아일보, 2014.07.03, '北 씨름,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자'
- 연합뉴스, 2014.11.14
- 통일뉴스, 2014.07.06,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 통일뉴스, 2016.07.30
- JTBC, 2014.11.14, '북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 적극 추진'
- NK뉴스, 2016.05.22
- NK투데이, 2016.05.26, '북한, 무형문화재 10여건 등록 …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 민주조선, 2015.07.09,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1)」
- 민주조선, 2015.07.15,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2)」
- 민주조선, 2015.07.20,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3)」
- 민주조선, 2015.07.23,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물질민족유산심의위원회(위원장 룡주) 결정문, 2012. 08.12
- 조선중앙통신, 2014.10.30, '201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
- http://www.unesco.org/culture/ich/en/submitting–states–and–priorities–00860, Submitting States and priorities for 2017 cycle
- UNESCO Nomination file no. 00914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0 No. 2, June 2017, pp.94~115.*
Copyright©2017,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Focusing on joint nomination to the Representative List

Song Min-Sun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 syujin@korea.kr

Abstract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inscrib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4 and 'Tradition of kimchi-mak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llowed in 2015. It is presumed that North Korea was influenc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scribing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in 2012 as well as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3. These cases show the necessity (or possibility)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UNESCO ICH lis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cultural integr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review UNESCO's ICH policy and examine the ways of cooperation and joint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etween the two Koreas.

First, I reviewed the amendment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Koreas and how the two countries applied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the cultural exchange is a non-political field, given the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influenced by politics. Therefore, we devised a stepwise development plan, divided into four phas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motion, diversification, and policymaking and alternative development.

First a target group will be needed. In this regard, joint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ill be suitable for cooperation. Both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separate nominations on shared ICH elements to the UNESCO lists. Therefore, I have selected a few elements as examples that can be considered for joint nominations. The selected items are makgeolli (traditional liquor), jang (traditional soybean sauce), gayangju (homebrewed liquor), gudeu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and jasu (traditional embroidery).

Cooperation should start with sharing information on ICH elements. A pilot project for joint nomination can be implemented and then a mid-term plan can be established for future implementation.

When shared ICH elements are inscribed on UNESCO ICH lists, various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as follow-ups, such as institution visit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joint monitor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tual cooperation of the two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be a unique example between the divided countries, so its value will be recognized as a symbol of cultural cooperation. In addition, it will be a foundation for cultur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nd it will show the value of their unique ICH to the world. At the same time, it will become a good example for joint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recommended by UNESCO.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oint nomina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Korean cultural integration
Received 2017. 03. 31 • **Revised** 2017. 04. 21 • **Accepted** 2017. 06. 05